

## 임시 고용 대행사 종업원의 보호

임시 고용 대행사(temporary agency)의 종업원들은 “실제 고용주(host employer)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들의 급여는 “일차 고용주(primary employer)”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일차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실제 고용주에게 파견하여 일하도록 하는 임시 고용 대행사 또는
2. 전문 고용주 단체(PEO)로서 실제 고용주의 종업원들을 PEO 자체의 급여 지급 대상에 올리는 단체

### 실제 치사 사건의 예

어느 임시 근로자가 공업용 접착제를 혼합하는 도중에 혼합기의 노출된 회전축에 얽히게 되어 사망했다. 만약 해당 혼합기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의 위험요소를 실제 고용주가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요소로부터 그 근로자를 보호했다면 그는 오늘날도 살아 있을 것이다.

일차 고용주는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주의 작업 현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종업원들이 효과적인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그리고 배정된 작업에서 요구되는 기타 안전 프로그램들의 대상에 확실히 포함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가 확실히 제공되도록 한다.
- 종업원들에게 알리기를 만일 그들이 합리적으로 믿기에 위험한 작업이 그들에게 배정되면 그들이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일차 고용주에게 돌아가서 다른 작업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이러한 이중 고용주 상황에서 일차 고용주와 실제 고용주 모두는 해당 종업원들을 안전 및 보건 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캘리포니아/직업 안전 보건 권리국(Cal/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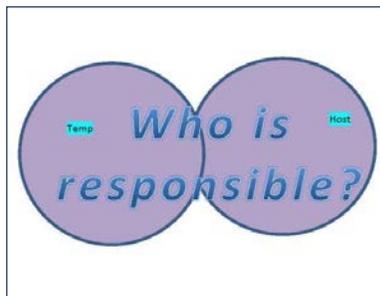
일차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급여 수표를 발행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용주(일차 고용주라고도 불리우는)는 근로자의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고용주의 작업 현장에서 해당 종업원들을 감독합니다.

**주의사항:** 한 종업원이 동시에 두 고용주를 갖게 되는 이중 고용주 상황은 건설 현장에서와 같이 2명 이상의 고용주들의 종업원들이 일하는 다수 고용주 작업 현장과 다릅니다. 그러나 다수 고용주 작업 현장에서도 이중 고용주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수 고용주 작업 현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8권\(T8 CCR\) 336.10 조](#)를 참조하십시오.

### 고용주의 책임

임시 고용 대행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일차 고용주 및 실제 고용주 모두가 임시 고용 대행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Cal/OSHA](#)는 일차 고용주 및 실제 고용주 모두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Cal/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그들 각자의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서가 종업원들을 보호해야 할 각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조건

일차 고용주 및 실제 고용주 모두는 해당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 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8권(T8 CCR)의 Cal/OSHA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다른 고용주들과 마찬가지로 일차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된 효과적인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수립하고 온전히 시행해야 합니다.



일차 고용주 및 실제 고용주는 작업 환경 및 근무 작업의 유형에 따라서 Cal/OSHA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 고용 회사들을 위해서 선정된 주제

모든 고용주들은 그들의 종업원들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에는 위험요소 인식, 노출 방지 및 안전 작업 관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제조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지도해야 하고 Cal/OSHA 규정 준수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차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일차 고용주가 기본 훈련을 제공하였더라도 실제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특정한 업무 및 작업 조건에 적합한 현장별 특정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차 고용주는 실제 고용주가 제공한 훈련이 모든 잠재적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다루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 기록관리

### [T8 CCR\(캘리포니아 규정집 8 권\) 14300-14300.48](#)

조에 명시된 기록관리 규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고용주들에게는 그들의 종업원들이 연루된 작업 관련 치사 사건, 상해 및 질병을 기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차 고용주가 종업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차 고용주가 상해 및 질병 기록을 책임집니다. 고용 회사와 실제 고용주가 그러한 감독 역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두 고용주가 기록 관리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전적인 감독권을 가진다면 그 실제 고용주가 상해 및 질병 기록을 유지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이중 고용주 상황하에서의 기록관리 요건은 [T8 CCR 14300.31](#)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업원들의 상해 및 질병 기록은 어느 한 고용주의 일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작업 관련 상해 및 질병은 [T8 CCR 342](#) (a) 조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두 고용주 모두에 의해서 Cal/OSHA 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일차 고용주들을 위한 위한 안전 작업 관행

아래를 보시면 종업원들이 실제 고용주들의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고 양호한 보건상태 하에서 일하도록 하는 책임을 일차 고용주들이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의 공통된 안전 작업 관행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실제 고용주의 작업 현장에 있는 위험요소를 인지한다. 종업원들을 위한 훈련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고용주와 합의를 도출한다.
- 실제 고용주와 동반 협력하여 종업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장 내 구역을 식별하고,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방침을 확실히 마련하고, Cal/OSHA 규정을 확실히 따르도록 한다.
- 종업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작업시 그들의 안전 및 보건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한다.
-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조사에 깊숙히 간여하여 단지 발생한 문제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조사 진행 과정에 참석하여 실제 고용주를 도와서 의미있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종업원들이 작업 시 여러 다른 도구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종업원들에게는 그들이 특정 도구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체와 실제 고용주의 지시사항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실제 고용주가 요구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한다.



## Cal/OSHA 상담 서비스를 위한 연락 방법

간행물: [www.dir.ca.gov/dosh/PubOrder.asp](http://www.dir.ca.gov/dosh/PubOrder.asp)

상담 프로그램: [www.dir.ca.gov/dosh/consultation.html](http://www.dir.ca.gov/dosh/consultation.html)

무료 전화번호: 1-800-963-9424 현장

### 현장 도움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사무소: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559-454-1295;	샌디에고/임페리얼:	619-767-2060
북 캘리포니아:	916-263-0704;	샌버나디노:	909-383-4567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	510-622-2891;	샌페르난도 밸리:	818-901-5754
라 팔마/LA/오렌지:	714-562-5525		

본 문서의 의도는 직업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규정의 적용 범위, 세부 내용 및 예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 그리고 그 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을 알기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규정집 8 권(Title 8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및 노동법을 직접 참조하시면 됩니다.